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5
----------	-----

제출년월일 : 2017. 8.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한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
- 나. 우리 군 조례에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경우가 있어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하여 2015. 7. 10. 조례 서식을 일괄개정 함
- 다. 일부 조례 중 일괄개정에 포함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추가 일괄개정으로 별지서식의 개선 필요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3. 주요내용

- 가. 우리 군의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이 있는 조항과 별지서식을 일괄개정 하고자 함
- 나. 평창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별지서식 5개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 등의 대체수단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24조의2(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7. 2. 27. ~ 3. 19.)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감사실-2294호)
- 3) 부패 영향평가 심사결과 : 원안동의(기획감사실-2353호)
- 4) 법제심사 : 적정(기획감사실-3849호)
-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2조(「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제3조(「평창군수방단운영조례」의 개정) 평창군수방단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3과 같이 한다.

제4조(「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의 개정)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4와 같이 한다.

제5조(「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5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 사용한다.

[별지 1]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별지제2호서식

광 고 계 재 결 정 통 지 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명	☎		
결 정 사 항				
계재여부	계재	계재불가	불가시 사유	
발 행 일	년	월	일	발 행 량 때
광 고 료	금 액			
	납입기한	년	월	일까지
	납 부 처	평창군청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의 공공발간물 광고계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평창군수</p>				
<p>※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평창군 공공 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자징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별지 2]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제1호서식

출 입 증

(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3] 평창군수방단운영조례 별지제1호서식

평창군수방단 편성 및 소집현황

편 성 현 황				소 집 상 황						비고
일련 번호	직책	성명	생년월일	일시		일시		일시		
			주소	소집	시간	소집	시간	소집	시간	

[별지 4]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별지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8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평창군 읍·면			번지(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2차 검사	
						검사일자 (. .)		사항	검사일자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별지 5]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지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 과태료부과·징수 결정통지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관련조항		위반내용	
	부과근거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관계법령 발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

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7.3.30.] 제24조의2제1항제1호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예산, 주민에게 부담비용 발생 없음.
- 평창군 조례,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별지 서식 개정은 행정절차만 완료 되면 되므로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별지서식만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 추계서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연락처	(033) 330 - 2465